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50
----------	------

제출연월일 : 2020. 5.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 정비하고, 기금 사업의 회계관직을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맞게 정비

2. 주요내용

- 가.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정비(안 제6조)
- 나.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 인용 조문 정비 (안 제7조)
- 다. 재난관리기금 회계관직 정비(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40조 ~ 제42조, 제68조
-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덧붙임

가. 입법예고기간 : 2020년 04월 08일 ~ 04월 27일(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9. 관련부서 : 경기도 자연재난과 자연재난예방팀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풍수해저감계획”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을 “재해지도”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하남시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8. 법 제3조제1호 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하남시장은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하남시가 소유·관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대피”를 “다른 대피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는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을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으로 한다.

1. 분청

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팀장

2. 제1관서(동은 제외한다)

가.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 관련 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 관련 업무 담당팀장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 를 “시행에”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안전정책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안전정책과장 유재영
	팀장 직위 · 성명	안전협력팀장 전용신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전용신 (031-790-510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p> <p>가. (생략)</p> <p>나. <u>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u></p> <p>다. ~ 자. (생략)</p> <p>3. ~ 6. (생략)</p> <p>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p> <p>가. <u>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u></p> <p>나. <u>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u></p> <p>다. (생략)</p> <p><신설></p>	<p>제6조(기금의 용도)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하남시가 소유·관리하는 공공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u></p> <p>다. ~ 자. (현행과 같음)</p> <p>3. ~ 6. (현행과 같음)</p> <p>7. ----- ----- -----</p> <p>가. <u>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u>----- ----- ---</p> <p>나. ----- <u>재해지도</u></p> <p>다. (현행과 같음)</p> <p>8. <u>법 제3조제1호 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u></p>

8. (생략)

9. (생략)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긴급재난 응급복구비 및 복구관
련 제경비

<신설>

<신설>

<신설>

9. (현행 제8호와 같음)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삭제>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
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
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
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
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
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한다.

③ 하남시장은 영 제74조제2호에 따
라 하남시가 소유·관리하지 않는 시
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의 용도로 기
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
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

<p>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u>대하여</u>는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p>② ----- <u>대해</u> <u>서</u>----- -----.</p>
<p>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p> <p>1. <u>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u></p> <p>2. <u>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u></p> <p>3. (생략)</p> <p>② <u>기금운용관 ·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u></p>	<p>제9조(회계공무원) ①----- ----- -----.</p> <p>1. <u>본청</u></p> <p>가. <u>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u></p> <p>나. <u>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팀장</u></p> <p>2. <u>제1관서(동은 제외한다)</u></p> <p>가. <u>분임기금운용관 : 재난 관련 업무 담당과장</u></p> <p>나. <u>기금출납원 : 재난 관련 업무 담당팀장</u></p> <p><삭 제></p> <p>② <u>기금운용관 ·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u>----- ----- -----.</p>
<p>제9조의2(<u>기금운용관의 직무위임</u>) <u>기금운용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하남시 재무회계규칙」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의 직무를 위임한다.</u></p>	<p><삭 제></p>
<p>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② (생략)</p> <p>③시장은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u></p>	<p>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에 따른</u>-----</p>

<p>운용 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 ----- -----.</p>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시행규칙) ----- <u>시행에</u> ----- -----.</p>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

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 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 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삭제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가. 공중의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개정:시행 2020.4.8.)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2020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340페이지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음
-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별도관리 하여야 함

구 분	시·도	시·군·구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예산업무 담당 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국)장	기금별 담당 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과)장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